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방향에 맞춰 공무원 동일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 특례기간 및 특례기간에 대한 월 지급액 상한을 확대하는 한편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제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“3개월째까지:”를 “6개월째까지:”로 하고, 같은 목 후단 중 “250만원”을 “1개월째는 200만원, 2개월째는 250만원, 3개월째는 300만원, 4개월째는 350만원, 5개월째는 400만원, 6개월째는 45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4개월째”를 “7개월째”로 한다.

제19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⑬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인 공무원의 수당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2(육아휴직수당) ① (생략)	제11조의2(육아휴직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② -----
1.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	1. -----
가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.	가. ----- 6개월째까지: -----
나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	----- 1개월째는 200만원, 2개월째는 250만원, 3개월째는 300만원, 4개월째는 350만원, 5개월째는 400만원, 6개월째는 450만원-----
	나. ----- 7개월째-----

개월째까지: 제1항에 따른 금액 2. (생략) ③ ~ ⑧ (생략) 제19조(수당등의 지급방법) ① ~ ⑫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 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수당등의 지급방법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 ⑬ 「<u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7조 의2, 「<u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 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및 「<u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</u>」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인 공무원의 수당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락처	(044) 205 - 3353